

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9. 2.

임실군의회 의장

### 1. 제정이유

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다문화가족 시책 수립에 대한 임실군수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다.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대상범위 규정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라.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·운영(안제5조 ~ 안제11조)
- 마.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12조)
- 바.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위탁 및 단체등의 지원(안 제13조, 안제15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  - 1)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: 원안동의
  - 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15.7.1 ~ 2015.7. 20)결과 : 특이사항 없음
  - 2) 비용추계서 : 붙임
  - 3) 관련법령 발췌문 : 붙임

##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3조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.
 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 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2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  -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임실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사업)**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, 홍보, 문화, 체육행사
2.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
3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, 직업교육·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업
4.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
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6.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·건강에 대한 교육, 산전·산후 도우미 파견,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
7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·번역 서비스의 제공
8.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·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
9.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또는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경비 지원
10. 결혼이민자등 생일잔치 및 문화체험 지원
11. 결혼이민자등 친정부모 맺어주기 지원
12. 결혼이민자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지원

② 제1항 제9호의 경우 부부가 임신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)**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임신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제6조(협의회 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2. 경찰서, 교육지원청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자
3. 다문화가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4.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
5.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
6.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인정한 자

④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팀장으로 한다.

**제7조(협의회의 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
3.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8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조(회의)**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**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
2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
3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

③ 위촉직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1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)** ① 군수는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업무의 위탁)**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3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**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는 지원센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

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14조(포상)**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, 개인,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임실군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5조(수당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.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, 사업비 등 필요경비
- 제14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
### 2. 비용추계의 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
-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

#### 나. 추계 결과

- 다문화가족지원 운영비 및 사업비 : 468,091천원/년

#### 다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:천원)

년도	지원대상	지원내용	총예산액	증감액
2015	임실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	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	468,091	

### 3. 재원조달방안

- 국고보조사업(국비 70%, 도비 9%,군비 21%)
- 도비보조사업(도비 40%, 군비 60%), 자체사업(군비100%)

### 4. 작성자 : 주민복지과장 서 성 석

붙임 : 연도별 비용추계표

**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)	3차년도 (2017)	4차년도 (2018)	계
세 출		468,091	499,597	531.600	552.900	2,052,188
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		468,091	499,597	531.600	552.900	2,052,188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468,091	499,597	531.600	552.900	2,052,188
	보조금 (국도비)	276,197	288,697	301,700	313.700	1,180,294
	지방교부세					
	군비	191,894	,210,900	229.900	239.200	871,894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					
	세외수입					
	군비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

**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**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